



[2018.1.18.] [14532 , 2017.1.17.,]

- (- 가, ,) 044 - 201 - 6832, 6836
- (-) 044 - 201 - 6838, 6839
- (- 가,) 044 - 201 - 6843, 6833
- (- ,) 044 - 201 - 6835, 6848
- (-) 044 - 201 - 6837, 6844

42 () 41

1 3 가 1
1 . < 2016.5.29.>

- 1.
2. . . .
3. ,

1 , ' .<

2016.5.29.>

1 가 1 .<

2 1 .< 2016.5.29.>

1 4 .< 2016.5.29.>

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18.1.18.] [환경부령 제745호, 2018.1.17., 타법개정]

환경부(화학안전과-영업허가, 교육, 도급) 044-201-6832, 6836

환경부(화학안전과-화학사고) 044-201-6838, 6839

환경부(화학안전과-장외영향평가, 위해관리계획) 044-201-6843, 6833

환경부(화학안전과-취급시설기준) 044-201-6837, 6844

환경부(화학안전과-수입, 확인명세서) 044-201-6835, 6848

제48조(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)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30.>

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30.>

1.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
2.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
-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,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.
 1. 서면통지하는 경우: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
 2.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: 설명 후 서명날인
 3.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: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: 일간신문,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·구청·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, 동사무소·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7.5.30.>